

[사 건 명] 행심 2014-15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2014.9.4. 청구인 ○○○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6. 27. 청구인의 학교폭력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당시 심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과 녹음기록물(이하 ‘이 사건 녹음기록물’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4.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녹음기록물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녹음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4. 9. 6. 경 알게 되었고, 이의가 있어 2014. 9.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달리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인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 녹음기록물을 통하여 이 사건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는 공개원칙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위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예외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록이 허위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천시 교육청 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의록과 이 사건 녹음기록물을 대조 확인한 결과 ‘기록자가 6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부분은 있으나, 왜곡·변조·허위작성 한 사실은 없다고 판명이 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제4호·5호·6호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6. 27. 청구인의 학교폭력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당시 심의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회의록과 이 사건 녹음기록물이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삭제되지 않고 현재 ○○초등학교에 보관중인 상태이다.
- 2) 인천시교육청은 이 사건 회의록을 이 사건 녹음기록물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기록자가 6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부분은 있으나, 왜곡·변조·허위작성 한 사실은 없다고 통보하였다.
- 3)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 사건 녹음기록물의 비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규

정하고, 위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달리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을 대조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의록은 ‘기록자가 6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부분은 있으나, 왜곡·변조·허위작성된 사실은 없다고 판명이 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는 공개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위 법률 제9조의 예외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 학폭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학폭법시행령 33조 및 규정들의 내용, 학폭법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폭법 제21조제3항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학폭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자치위원회회의록은 예외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녹음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것이 녹취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학폭법 제21조 제3항 및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설치한 입법목적 및 학폭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회의록을 공개할 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개개 위원들 중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녹음기록물이 공개가 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녹음기록물의 경우에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 위원들의 이름만을 삭제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아울러 이 사건 녹음기록물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녹음기록물에는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 사건 녹음기록물의 비공개에 동의를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사건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녹음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